

보험연구원 **REPORT**

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



자전거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동킥보드,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육상 이동수단에 관한 기존 규제



육상 이동수단에 관한 기존 규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운전자 의무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사용신고 및 안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고시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

육상 이동수단에 관한 기존 규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운전자 의무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사고시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제

육상 이동수단에 관한 기존 규제



규정 없음

면허

등록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보유자 책임

보험가입의무

별도의 규정 적용

음주운전

안전기준

전동킥보드, 어떤 규제 적용해야 하나?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어떤 규제 적용해야 하나?

차도운행

번호판부착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 현행 법령상 자동차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수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 현행 법령상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차와 자전거 구별의 핵심요소



구분이 모호한 현대의 소형 이동수단



전기자전거의 분류

자동차

자전거



전동휠 · 전동킥보드의 분류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와
자동차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제2조 제21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규율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 제2조 제21의2호)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배기량 125cc 이하
정격출력 11kW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야 한다.

시속 25km에서
전동기가 정지하고,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세 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처럼 취급,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한가?

2020년 12월 시행
도로교통법

2021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



관련 법령상 '자동차' 개념 분류



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자동차 관련 규제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구분

- 자동차 : 원동기를 주된 동력으로 사용
- 자전거 : 사람의 힘을 주된 동력으로 사용
- 2020년 12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개념 도입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규율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배기량 125cc 이하 정격출력 11kW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시속 25km에서 전동기가 정지하고, 차체중량이 30kg미만이어야 한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